

# 함께해요 청렴실천

고양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

## 청탁금지법 준수

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(사고·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 등의 가액 범위)

음식물 3만 원

개정후 3만 원

선물 5만 원

개정후 5만 원 (농수산물·가공품 10만 원)

경조사비 10만 원

개정후 5만 원 (화환·조화 10만 원)



**농축수산물(3만 원) + 기타 선물(7만 원)**

= 10만 원 상당 선물 제공

농축수산물 아닌 일반 선물 가액한도가 5만 원이므로 **위반!**

**농축수산물(10만 원) + 기타 선물(5만 원) 선물 제공**

전체 선물 가액한도 10만 원을 초과해 **위반!**

**유가증권(5만 원) 선물 제공**

유가증권(상품권, 초대권, 기프트콘 등)은 선물의 범위에 들지 않아 **위반!**

청탁금지법 상담은 국번없이 ☎110 또는 ☎1398



경조사 가액기준 : 5만 원   
화환 · 조화는 10만 원

- 축 · 조의금 5만 원까지 **OK!**

- 화환 · 조화 10만 원까지 **OK!**

- 축 · 조의금 5만 원+화환 · 조화 5만 원 **OK!**

화환 · 조화 10만 원+축조의금 5만 원 **NO!**

합산가액은 10만 원까지

